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산동면 읍승격 및 비산동·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

3. 주요내용

-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 - 일반직 계 : 1,755명(변동없음)
 - 5급 : 91명 → 90명(△1명)
 - 6급 이하 : 1,645명 → 1,646명(+1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산동면 읍 승격 및 비산동·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,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를 1명 증원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,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